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기한 재차 구속 금지〉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86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구속제도 개관	4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견태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4. 10. 2.
3. 회 부 일: 2024. 10. 4.

II. 제안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 ③ (생략) <u><신설></u>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계속(係屬)되고 그 다른 사건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 ②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 ②

(생 략) <u><신 설></u>	(현행과 같음) <u>③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재차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2. 구속제도 개관

“구속”은 구인 또는 구금을 명령하는 재판이라는 법률행위와 그 재판을 집행하는 사실행위가 포함된 복합적인 소송행위를 뜻함. 또한, “구인”은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구금”은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함.¹⁾

강제처분인 구속(구인 또는 구금 포함)을 할 때에는 영장주의를 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는데,²⁾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관해 구속되는 사람을 단위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인단위설과 구속사유로서의 피의사실인 사건(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1)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2)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사실 포함)을 단위로 정해야 한다는 사건단위설이 대립되고 있음.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하여 사건단위설을 취하고 있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³⁾

한편,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시부터 2개월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음. 또한,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심급마다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 되며, 전체 최장 구속기간은 18개월이 됨.⁴⁾

3)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구속 시 10일, 검사 구속 또는 피의자 인치 시 10일(추가 10일⁵⁾)로 최장 구속기간은 30(추가 10일 포함)일임.

<심급별 구속기간>

1심	2심	3심
6개월	6개월	6개월

<수사기관별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검사
10일	10일(추가 10일)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대법원 판례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해 사건단위설을 취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A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기소하고, A범죄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즈음 피고인의 다른 범죄(B범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소지가 있음.

5)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다른 사건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다른 사건을 이유로 새로 구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로써 구속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또한, 개정안은 특별히 구속을 계속하거나 재차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기한 구속을 허용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진실발견 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구속을 계속하거나 재차 구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해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해당 사유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개정안 도입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 또한 존재함.

따라서, 개정안 도입 시 구속을 계속하거나 재차 구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063